



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

-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2019. 11.



대구광역시 달서구
<http://www.dalseo.daegu.kr>
[환경보호과]

제 안 설 명 서

설명자: 환경보호과장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,

- 2016년 1월 이후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가 동결되어, 인건비 및 제반비용 상승에 대한 업체 수익률이 감소됨에 따라 업체의 건전성 보장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2020년도 1월 2일자로 5.97% 인상된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상된 수수료를 명시하여 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 (현행 조례의 별표 수정)

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

- 본 조례안을 2019. 10. 1일부터 10.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으며,
- 2019. 11. 4일 조례 · 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.

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에

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.

증명 및 부록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

- 분뇨 수집·운반 수수료 인상에 따른 인상된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여 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
-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0012051
--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19. 11. 21.
제 출 자: 달서구청장
(환경보호과장)

1. 제안이유

- 2016년 1월 이후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가 동결되어, 인건비 및 제반비용 상승에 대한 업체 수익률 감소됨에 따라 업체의 건전성 보장 및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2020년도 1월 2일자로 5.97% 인상된 수수료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인상된 분뇨수집·운반 수수료 명시(현행 조례의 별표 수정)

3. 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표 참조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하수도법」 제41조 (붙임 참조)

- 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- 다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9. 10. 1.~10. 21.)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비용추계서: 비해당
- 4)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5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: 원안 동의
- 6) 조례·규칙 심의 결과: 원안 가결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분뇨수집·운반 및 처리 수수료(제7조 관련)

구 분	수수료	비 고
기본(750 ℥ 까지)	16,770원	「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」에 따른 분뇨
초과(100 ℥ 마다)	1,460원	처리 수수료(10 ℥/10원)가 포함된 금액임.

【 관 련 법령 】

□ 「하수도법」

제41조(분뇨처리 의무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(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5, 2012.2.1, 2013.7.16>

③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·선박 또는 항공기를 운행하는 자 및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·관리하는 자는 그 화장실에서 배출되는 분뇨(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포함한다)를 스스로 수집·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, 스스로 수집·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·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④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분뇨를 수집·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시·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·운반업자가 수집·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집·운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1.4.5, 2013.7.16>